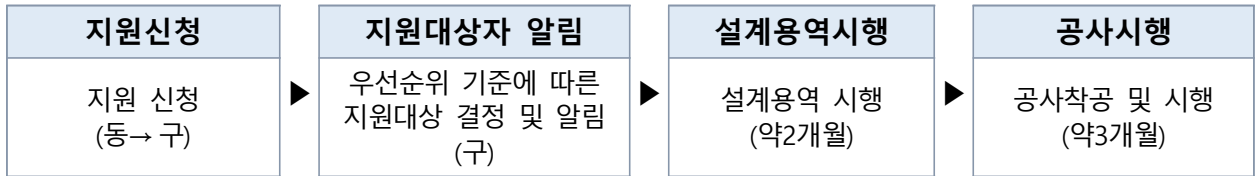


[2025년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지원사업 안내]

1. 신청내용

- 신청기간: 2025. 06. 23.(월) ~ 2025. 07. 25.(금)
- 각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접수 → 도시재생과로 공문 발송
 - ※ 본과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이 불가함으로,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 확인 요청
- 제출서류: 집수리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2)
 - ※ 임차인 신청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생협약서(서식3)' 제출
- 진행절차



2. 집수리 지원

- 지원주택: 사용승인(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 지원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보일러, 상·하수도, 방수, 설비 등 2개 이상 항목
-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1. 65세 이상인 고령자, 독거노인
2.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6.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경도 장애이상)
7. 한부모 가정
8. 주거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차차상위계층 (60% 이하)
 - ※ 1~7호의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 우선순위 결정

- 배점의 합계(해당 항목 총 합계)에 따라 순차적 지원

1. 소득분위 기준

구 분	주거급여 대상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그 외
배 점	4	3	2	0

2. 주거약자 기준(집수리 지원대상 1~7호)

구 분	1호	2호	3~6호	7호
배 점	1	2	2	1

3. 군·구 판단(점검) 하, 개선이 시급한 경우: 2점

- 동일 점수의 경우, 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

■ 집수리 지원 제외대상

1. 개별주택·개별세대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2. 무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3. 3년 이내 다른 법률 또는 지원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주택
4.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